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형폐지 월간 강좌

'사형제도 폐지의 당위와 전망'

일시: 2007년 1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5시

장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7동 6층 서암홀

강사: 한인섭 교수 (서울대 법대)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일정

14:00~ 14:10 한국지부 대표자 인사말

14:10~ 14:40 사형폐지운동 현황 보고

14:40~ 16:00 강론발표 <사형폐지, 당위와 그 전망>

한인섭 교수(서울법대)

16:00~ 16:20 휴식

16:20~ 17:00 토론 (질문과 답변)

17대 국회 시작 이후, 사형제도 폐지 관련 경과

2004. 08. 사형제도폐지 기원과 피해자 가해자를 위한 범종교 연합 기도모임
10. 범 종교연합 김승규 법무부 장관 면담
11. 사형폐지 입법화를 위한 세미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2005. 04. 사형폐지 입법화 촉구대회 (국회도서관 대강당)
05. 헬렌 프리진 수녀 초청 강연회 (정동 프란치스꼬 회관)
05. 김수환 추기경, 사형폐지법안 발의 각당 대표 의원 면담
07. 김수환 추기경, 강원용 목사, 송월주 스님 등 종교계 원로 사형제도 폐지 촉구 서명
10. 범 종교연합 천정배 법무부 장관 면담 (과천 법무부 장관실)
11. 세계 사형폐지의 날 기념 사형폐지 기원 미사 (명동성당)
12. 사형폐지 입법화 촉구를 위한 천주교 전국 교구 서명운동 실시
2006. 01. 국제앰네스티 한국을 '사형제도 폐지 집중 캠페인국가'로 선정 활동 시작
01. 국제앰네스티 / 천주교인권위원회 / 시민의신문 사형폐지 공동기획 기사
02. 김대중(전 대통령 / 노벨평화상 수상자) 사형제 폐지 지지서한 국제앰네스티에 기고
02.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소속의원 9명에게 공개서한
03. 사형제도 폐지 촉구 천주교 주교단 및 신자 115,861인 국회청원 기자회견
04.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 사형제도 폐지 촉구 성명발표
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최 사형폐지 특별법 공청회
04. 국제앰네스티, 전 세계적인 탄원편지쓰기 활동 시작
04. 세계 사형제도 현황 보고서 발표
06. 법무부에 사형제도와 관련한 국외연구 및 자료들 전달
06. 국제앰네스티 릴리안(Lilian Yolande Goncalves) 국제집행위원 법무부 방문
07. 국제앰네스티 주최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아시아지역 회의' 개최 (홍콩)
09.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천주교 주교단 및 사제단 시사회
09.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국회의장 및 의원 시사회
10. 세계 사형제도 반대의 날 '사형제도 반대 아시아 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서울)
10.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한국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편지쓰기 마라톤' 진행
10. 한국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주최 '강력범죄피해자 지원방안' 세미나 개최
10. 한국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 폐지 소책자 발간
11.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범종교연합 "Cities for Life" 행사진행-탄원서 900장
12. ADPAN 회원단체들 지속적으로 국회위원에게 탄원편지 발송(현재까지)
2007 1. 싸이월드에서 서명운동 진행중 (1.20 현재 21,841건)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 정기국회 처리 요청 종교·사회·인권 단체 호소문

생명을 지키는 일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에서 주인공 강동원은 부모와 사랑하는 여인, 사회로부터 베림받았던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여, 다른 사람의 죄까지 뒤집어쓰고 사형수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향해 닫혀있었던 마음을 열고, 자신을 철저히 버린 세상과 화해하지만, 곧 형장의 이슬로 사라기고 맙니다. 400만이 넘는 관객들, 또 동명의 책을 읽은 수백만의 독자들은 자신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있는 그를 죽이는 일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말하더라도, 죽이는 일은 죽이는 일 뿐입니다.

생명권은 인간이 가지는 권리 중 가장 앞서는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바로 국민의 생명권을 '제도'와 '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직접 침해하는 응보적 개념의 형벌제도입니다. 이미 세계 130여개 국가가 이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거나, 사실상 폐지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오랫동안 종교계와 인권운동진영이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정부에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인권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달라는 끊임없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형제도의 폐지는 인권의 가장 기본인 생명권을 지켜내는 일임과 동시에 국제사회와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구입니다. 1997년 이후, 9년 동안 단 한차례의 사형집행도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일은 전세계의 인권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일일 것입니다.

2006년 대한민국은 인권 국가로의 발돋음을 위한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올해, 한국은 UN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 되었으며, 차기 UN을 이끌어 갈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또, 국제적인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2006년을 한국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집중 캠페인의 해'로 정했고, 국내에서도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게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아시아 국가 중에는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한다면, 아시아 각국의 사형폐지 운동에도 커다란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06년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원 정원의 과반수가 훨씬 넘는 175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UN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더욱 당당하게 국제사회 앞에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5대, 16대 국회에 이어, 17대 국회에서도 사형제도폐지 특별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지난 해 절대 다수의견으로 사형제도 폐지를 국회와 법무부에 권고했으며, 현직 국회의원 과반수이상이 찬성한 사형제도폐지 특별법안을,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논의하여,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형제도의 존재가 범죄 발생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도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극단의 형벌을 내린다고 해서 피해자나 그 가족들의 피해가 회복되는 것도 아님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범죄자에 대한 검거율이 높아져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약한 현재의 피해자 지원제도를 보완하여 피해자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시의적절하게 돋는 일이 더욱 필요합니다.

모든 범죄의 발생 원인에는 사회적 책임이 뒤따릅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은 개인이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진정한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 역시 묵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형제도는 이 사회적 책임을 한 개인에게만 돌려버리는 너무나 비겁하고, 가혹한 형벌인 것입니다. 현재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수로 살고 있는 이들은 60여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형제도의 폐지는 이들에게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희망을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 이들이 자신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해 속죄하고, 그 죄 짓을 세상에 갚으며 살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형폐지 운동은 범죄의 가해자를 보호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은 누구의 것이나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함께 하자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폭력에 저항하고, 반대하는 것은 종교와 인권의 심성을 가진 모든 이들의 입장일 것입니다. 그 집행자가 국가이고, 현행법에 의한 집행이라고 할지라도, 생명과 인권의 옹호를 이해 물러 설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의 가치'가 모든 것들에 우선 되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조속히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을 국회에서 통과 시켜주시기를 17대 여야 국회의원님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불교인권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2007. 1. 20(토)

사형 폐지를 위한 변론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참조: <http://jus.snu.ac.kr/~ishan/bbs/zboard.php?id=sub1>

우리는 다음의 이유로 사형제도에 반대합니다.

1. 사형은 야만적이고 비정상적인 형벌입니다.
2. 사형폐지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사형을 폐지하거나 10년이상 처형하지 않는 나라가 전세계의 2/3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4년 7월 31일 현재)
*법률로써 사형을 완전히 폐지한 국가 : 80개국
*군사범죄를 제외한 통상범죄에 대한 법률상 사형폐지국 : 15개국
*10년이상 사형을 미집행한 사실상의 사형폐지국 : 23개국
[법률상/사실상 사형폐지국은 총 118개국]
*사형을 존치하고 있는 국가 : 78개국
3. 사형이 중대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형은 살인율에 실질적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4.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사형이라는 제도적 살인의 주체가 되어선 안됩니다.
5. 피해자의 법감정에 비추어 사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보호를 위해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정신적, 물질적 지원의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해자를 사형시킨다고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실제 이익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6. 모든 판결에는 오판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에 의한 재판으로 되돌이킬 수 없는 사형을 과하는 것은 지나친 오만입니다.

7.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개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형은 인간의 개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8. 오늘날 국가는 사형을 쓰지 않고도 교도소에서의 장기간 격리를 통해 흉악범의 위험성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9. 사형폐지를 시기상조로 보는 여론이 더 우세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범죄의 실태, 사형수의 삶과 개선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주장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정보와 풍부한 토론은 사형수에 대한 부당한 선입관을 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스컴에 의해 일방적/단편적으로 전해지는 정보가 모든 진실이라고 믿어서는 안됩니다.
10. 사형은 직무상 사형집행에 관여해야 하는 교도관들의 인권을 침해합니다.
11. 우리는 사형폐지를 목표로 합니다. 다만 사형선고를 극히 억제하면서 사실상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적 유예조치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12. 우리는 사형제도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환영합니다. 사형에 대한 풍부한 토의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앞당기고, 국민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형 : 최근의 추세>

1998년 이후 2004년까지 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미있는 변화가 진행되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1998년 이후 사형집행이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1998년 대통령이 된 金大中은 자신이 정치적 음해로 인한 사형선고를 받아 집행위기에 놓인 적도 있었으며, 사형의 정치적 남용을 경계해왔다. 정부 측에서 의도적인 폐지 주장을 적극 제기하지 않았지만, 법무부장관은 매우 신중하게 사형집행 자체를 재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미 사형이 확정된 자 가운데 무기형으로 감형된 사례가 여럿 생겨났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 하에서도 사형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2004년 현재 사형미집행상태가 7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한국은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의 반열로 접근하고 있다.

둘째, 사형폐지의 흐름은 국회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2000년 10월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의원 과반수의 서명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 특별법안에는 '모든 법률에서 사형을 폐지할 것'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관이 흉악범을 재판할 때 범죄의 종류와 죄질에 따라 복역후 15년까지는 가석방, 사면, 감형을 금하는 선고'를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러한 사형폐지법안은 그동안 사형폐지운동을 벌여온 종교단체(카톨릭, 개신교, 불교 등) 및 시민단체의 노력의 결실이었다. 비록 회기만료로 이 법안이 입법화되는데 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사형폐지에 동참했다는 사실은 앞으로의 진전과 관련하여 매우 주목할 대목이다.

셋째, 정부의 사형미집행의 추세는 법원의 사형선고를 훨씬 신중하게 하는 방향으로의 변호되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사형판결을 잇달아 파기하면서 양형에 관한 심리와 조사를 더욱 충실히 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다음은 최근의 대법원판결의 동향을 잘 보여준다.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动机,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평면적으로만 참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의 주관적인 양형요소인 성행과 환경, 지능, 재범의 위험성, 개선교화 가능성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통하여 사형선택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결의하고 준비하며 실행할 당시를 전후한 피고인의 정신상태나 심리상태의 변화 등에 대하여서도 정신의학이나 심리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보는 등 깊이 있는 심리를 하여 본 다음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양형에 나아가야 한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2004년 6월 현재 한국에서 사형이 확정되어 수감중인 자는 총 58명이다. 사형이 확정된 피고인도 2002년 6명, 2003년 2명 등으로 해마다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같이 법무부의 사형미집행, 국회의 사형폐지법안 등은 법원의 사형판결을 더욱 신중히 하는 효과를 낼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역전될 것 같지 않다. 따라서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드물게 사실상의 사형폐지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제1심 사형선고 10년전 20% 이하
제1심판결에서 사형선고 : 35명(1994년)→5명(2003년)

최근 '유영철 사건', '이학만 사건' 등을 계기로 사형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1심 재판에서의 사형선고 비율(1심 기준)이 10년전에 비해 5분의 1 이하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10일 '국회 김영란 대법관후보 인사청문특위' 주호영(朱豪英.한나라.대구 수성을)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10년간 전국 법원 1심 사형인원 누년비교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모두 165명(연평균 16.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사형선고자는 94년이 35명으로 가장 많았고, 95년 19명, 96년 23명 등 인반면에 2001년 12명, 2002년 7명, 2003년 5명 등으로 나타났다.

범죄의 수법과 성향이 날로 지능화·엽기화, 흉폭화 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비쳐볼 때 이처럼 1심재판 사형선고자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사회적으로 사형제도 폐지 목소리가 높아진 것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0년간 죄명별 사형선고자는 살인이 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 및 강도죄 57명,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6명, 기타(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 3명, 방화 1명 등이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최근 10년간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살인죄로 인한 사형선고자는 지난 94년과 95년엔 각각 20명, 17명에 달했으나 2002년과 2003년엔 각각 3,4명으로, 절도 및 강도죄로 인한 사형선고자도 지난 94년과 96년의 경우 각각 14명, 15명에 이르렀으나 지난 2001년에는 단 한명도 없었고, 2002년에 3명, 2003년 1명 등으로 크게 줄었다.

■ 사형관련통계

○ 최근 10년간 사형 확정자, 수감자, 감형자의 수

연도	확정인원	집행인원	감형자 수	년도말 미집행자
1994	5	15		44
1995	19	19		44
1996	9			53
1997	8	23		38
1998	4		2	40
1999	4		5	39
2000	9		2	46
2001	8			54
2002	2		4	52
2003	5			57

※ 1990~1994 감형자 없음

○ 현재 수감 중인 자의 수

- 죄명별 (2004. 7. 29. 현재)

유형	계	살인	존속살인	강도살인	성폭력 및 피해자보호법	인질강도
인원	58	23	1	9	14	11

- 연령별 (2004. 7. 29. 현재)

연령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인원	58	9	23	14	11	1

* 수감기간에 대한 통계 관리 자료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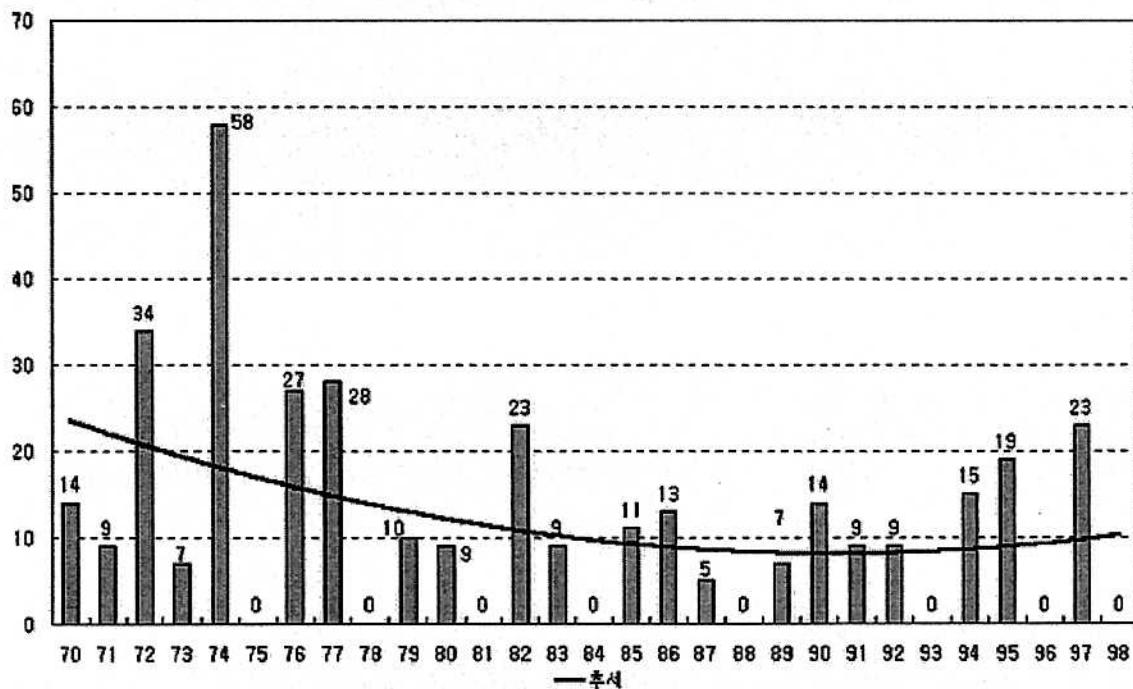
■ 무기징역형 관련 통계

○ 최근 10년간 무기형 확정된 누적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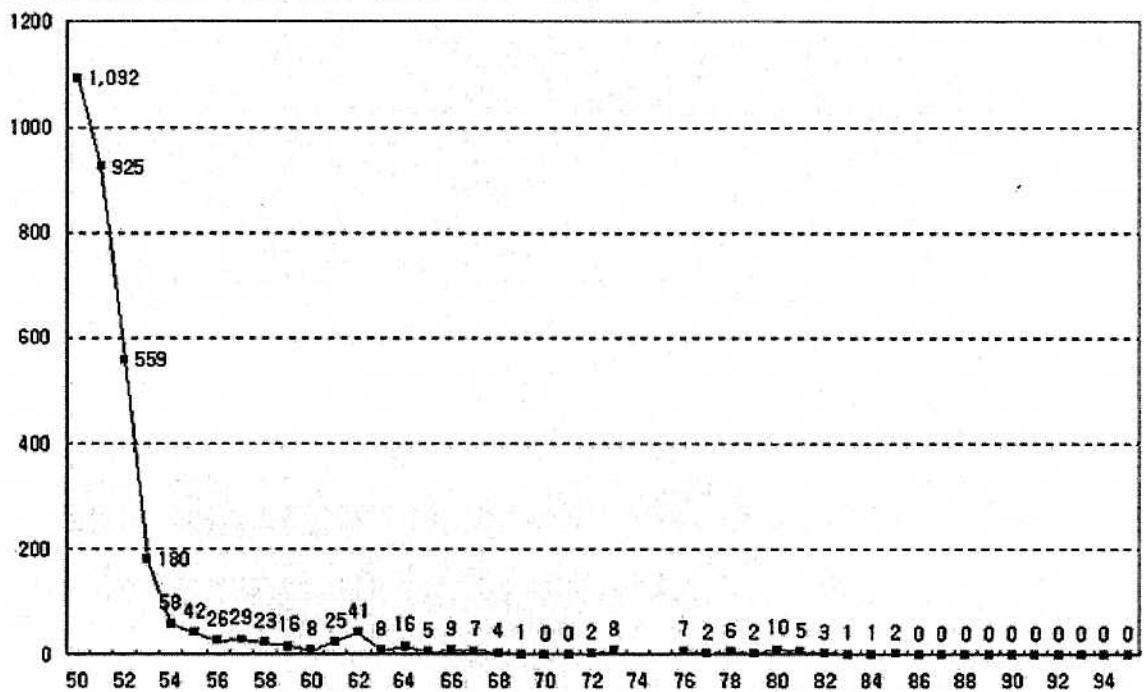
년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인원	1,105	1,118	1,164	1,204	960	1,026	951	1,042	1,098	994

* 그 외 관리하고 있는 통계자료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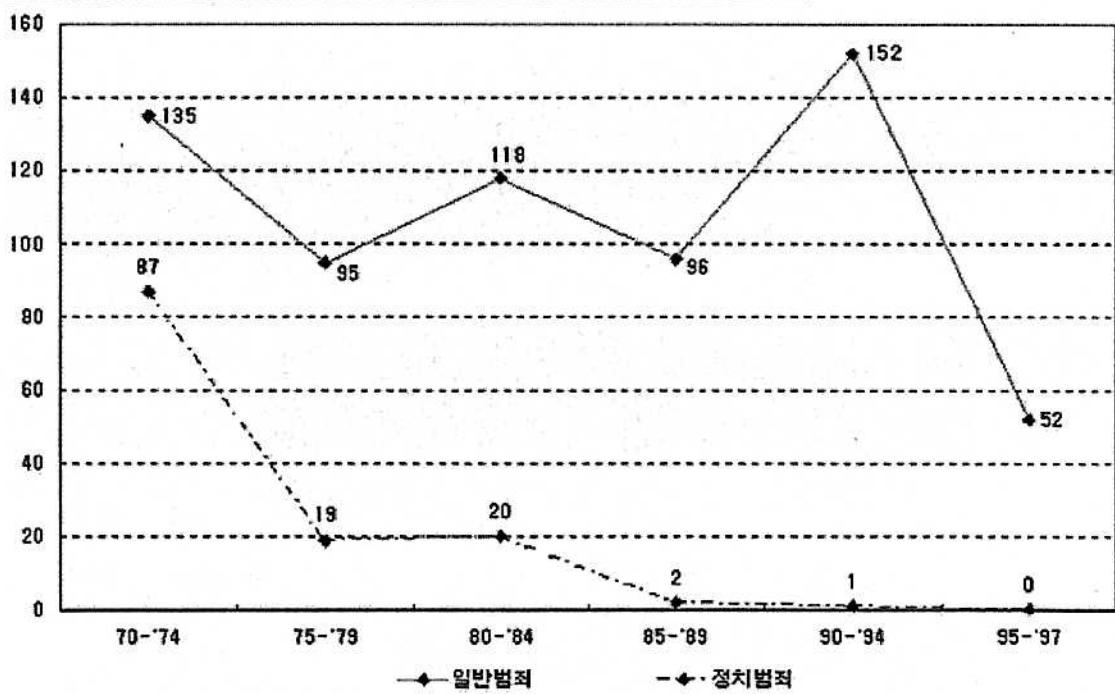
<표 7> 연도별 사형집행 현황(1970~1998)



<표 8> 군법회의 사형선고인원수(1950~1995)



<표 2> 제1심 형사공판사건 일반범죄·정치범죄별 사형선고인원수



일본의 사형집행통계 : 140년 역사를 보니...

일본에서 사형통계가 나온 것은 명치유신(1868년) 이후부터이다. 전근대국가는 통계를 만들지 않았지만, 근대국가는 통계를 만들어낸다. 그 때부터 사형집행통계를 간단히 뽑아보자.

1870년 : 1080명 집행

1880년 : 125명

1890년 : 39명

1900년 : 34명

1920년 : 39명

1940년 : 20명

1960년 : 39명

1970년 : 28명

1980년 : 1명

1990년 : 0명

2000년 : 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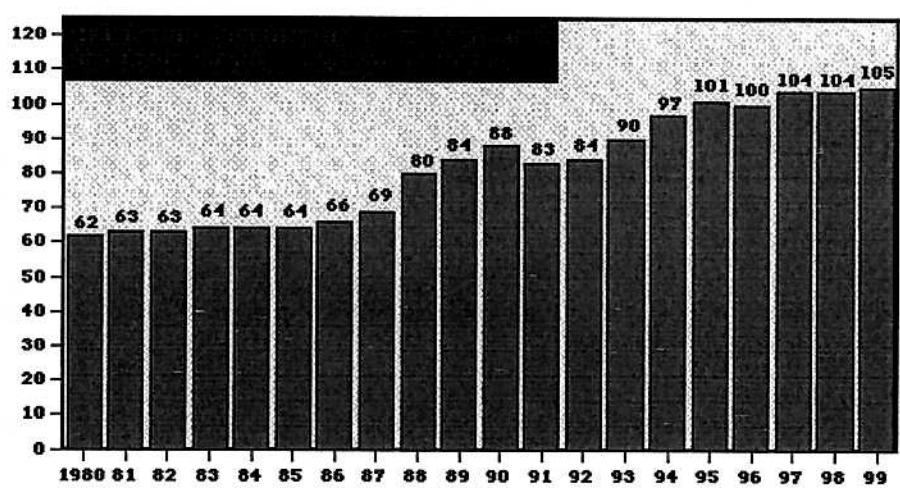
2003년 : 1명

놀랍지 않는가. 130년 전에는 매년 1천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한국에서 1870년경 병인사옥 때 몇천명의 천주교도들이 새남터 형장에서 죽어갔다. 그런데 근대화가 시작된 지 10년만에, 즉 1880년에 사형수는 125명으로 줄어든다. 왜? 근대적 감옥제도가 도입되어, 이전 같으면 죽었을 범죄자가 감옥에 수용된 것이다. 감옥의 정착은 사형의 감소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근대화는 이 점에서 '문명화'이다.

그 뒤 사형은 갈수록 감소하여 약 100년간 적게는 20명 많게는 40명 사이를 유지한다. 그러나 1980년대에 가면 매년 0~2건 정도의 숫자만 사형당했다. 0도 보인다. 최근엔 약간 늘거나 1명~5명 사이의 연간 사형집행 건수가 보인다. 일본은 사형폐지국이 아니다. 그렇지만 장기적 추세는 형벌로서의 사형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감소했다.

오늘날 사형은 범죄예방의 일반적 수단이 아니며, 최후의 수단으로 밀려났으며, 심지어 교수대나 전기의자가 몇년간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는 경우도 흔하다. 근대감옥(교도소)의 성공적인 정착은 '사형'을 유물실로 보내고 있는 중이다.

사형폐지국의 증가추세(1980~1999)



Source: Amnesty International, 1999

미국의 사형추세 : 핵심요약

미국의 사형의 추세는 다음과 같다.

-미국 전부가 사형존치/폐지의 어느 쪽에 있는 것이 아니다. 38개주는 사형을 존치하고, 12개주 및 워싱턴(수도)은 사형제도가 없다. 미연방은 사형을 존치하고 있다.

-1976년부터 지금(04년)까지 총 921명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최근의 통계를 보면 1999년에 98명, 2000년에 85명, 01년에 66명, 02년에 71명, 03년에 65명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졌다. Texas주는 이 기간동안 총 323명이 집행되어 전체 사형수의 1/3이 넘는다. 그리고 버지니아, 오클라호마, 미주리, 플로리다 등이 다수 집행주이다. 주로 남부에 집중되어 있다. 북동부 주들의 사형집행은 전체의 1%도 안된다.

-사형확정된 자 중 무고한 자(innocence)로 밝혀져 석방된 자가 총 114명이다. 최근 DNA 검사 등 새로운 과학수사기법으로 재심리한 결과 무죄석방자가 증가하고 있다.

-사형집행이 가장 많은 남부 주들은 가장 높은 살인율을 기록한다. 사형집행이 가장 낮은 북동부 주들은 가장 낮은 살인율을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 800여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사형의 살인억제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2%인 반면, 84%의 전문가들은 살인억제효과가 없다고 답하고 있다.

(상세는 첨부파일 및 <http://www.deathpenaltyinfo.org/FactSheet.pdf> 참조)

최근 미국의 수감인구의 폭증—얼마나? 왜?, 교정 200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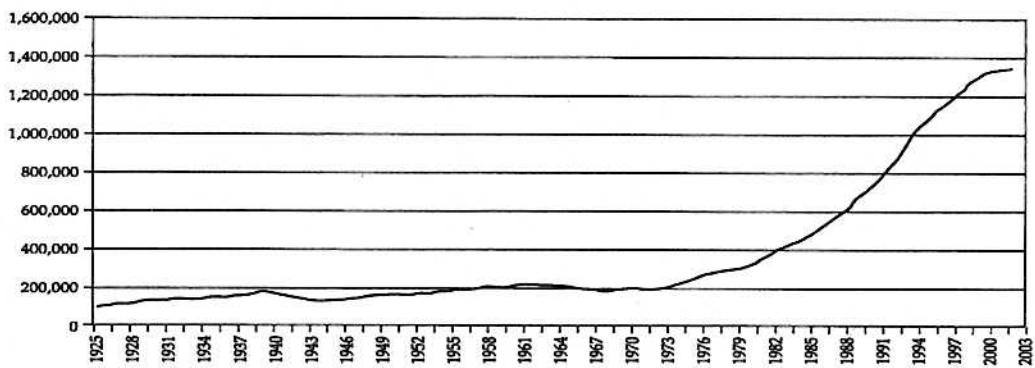
2. 수감인구의 폭증 및 형벌의 강화 : 현상적 측면

(1) 수감인구의 폭증

<표 1>은 미국 수감인구의 장기추세를 보여준다. 1970년대 중반까지는 대략 20만명 내외의 인구가 수감되고 있다. 그 기간동안 범죄율의 변화는 물론 전체 인구의 증가를 생각해도 수감인구는 안정적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수감인구의 총수는 현저히 증가하며, 최근에 올수록 그 증가추세는 더해지고 있다.

1.

2. <표 1> 미국의 수감인구—장기추세¹⁾



2004년 중반의 통계는 다음과 같다.²⁾ 연방법무부 통계국에 따르면, 미국 전체에 기결수와 미결수를 합친 총 수감자의 수는 2,131,180명에 이른다. 그 중 2/3에 해당하는 1,410,404명은 연방 및 주 정부의 교도소에 수감중이며, 1/3에 해당하는 713,990명이 지방 단위의 구치소(jail)에 수감되어 있다. 1995년부터 최근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3.5%에 이르며, 그 중 연방정부 하의 증가율이 7.8%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를 인구 10만명당 수감율의 통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4년 중반을 기준시점으로 할 때, 1년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인구 10만명당 486명에 이른다. 10년 전인 1995년의 숫자가 411명이었는데, 이후 매년 일정한 증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년보다 감소하는 해는 없다.

1) Cyndi Banks(2005), Punishment in America, Santa Barbara: ABC-CLIO, p.241.

2)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Bulletin, Prison and Jail Inmates at Midyear 2004, p.1.

3. <표 2> 전국수감자(기결+미결)의 연령별·인종별 구성(인구 10만명당)³⁾

나이	남자				여자			
	합계	백인	흑인	히스패닉	합계	백인	흑인	히스패닉
합계	1,348	717	4,919	1,717	123	81	359	143
18~19	1,727	911	5,473	1,957	112	71	262	162
20~24	3,255	1,641	11,054	3,577	264	191	625	304
25~29	3,390	1,666	12,603	3,606	283	203	746	268
30~34	3,060	1,691	10,979	3,438	330	237	905	313
35~39	2,755	1,607	10,036	2,866	346	238	993	331
40~44	2,187	1,314	7,993	2,403	247	162	764	271
45~54	1,162	664	4,546	1,652	101	63	327	136
55이상	247	170	898	473	11	8	29	25

<표 2>는 수감자의 연령별·인종별 통계이다. 남성의 경우에는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는 30대 후반을 정점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종별로 보면 흑인의 상대적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남성의 경우를 보면 전체 수감자(미결 포함) 1,947,800명 중 흑인의 비율이 43.3%, 백인의 비율이 35.5%, 히스패닉의 비율이 18.8%를 차지한다. 미국의 총인구 중에서 흑인의 비율은 대략 12%를 약간 상회하는데, 수감율은 인구비보다 3.5배 이상 높다. 백인은 인구비에 비해 절반 이하의 수감율을, 히스패닉은 인구비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비율을 차지한다. 흑인 중에서도 남성, 그 중에서도 20대, 30대의 수치가 매우 높음이 주목된다. 25세 이상 29세 이하의 흑인 남성 수감자의 숫자(155,600명)는 그 연령의 흑인남성 전체의 12.6%(인구 10만명당 12,603명)를 차지한다. 미국의 대량수감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흑인/남성/청년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수감자 수가 늘어났다고 보호관찰 등의 사회내 처우의 역할이 축소된 것은 아니다. 교도소 수감인구 뿐 아니라 전체 형사사법의 처리대상이 된 인구가 훨씬 확대된 것이다. 다시 말해 수감인구 자체가 격증할 뿐 아니라, 전체 형사사법의 적용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표 3>을 보면, 지난 20년에 걸쳐 보호관찰은 2.4배, 가석방은 2.3배 늘었으며, 시설내처우 및 사회내처우를 포함한 총 성인감시대상자는 1.8배 이상 늘었다. 이 기간동안 범죄의 총건수는 감소했에도 불구하고 시설내처우 및 사회내처우 모두 대량팽창을 야기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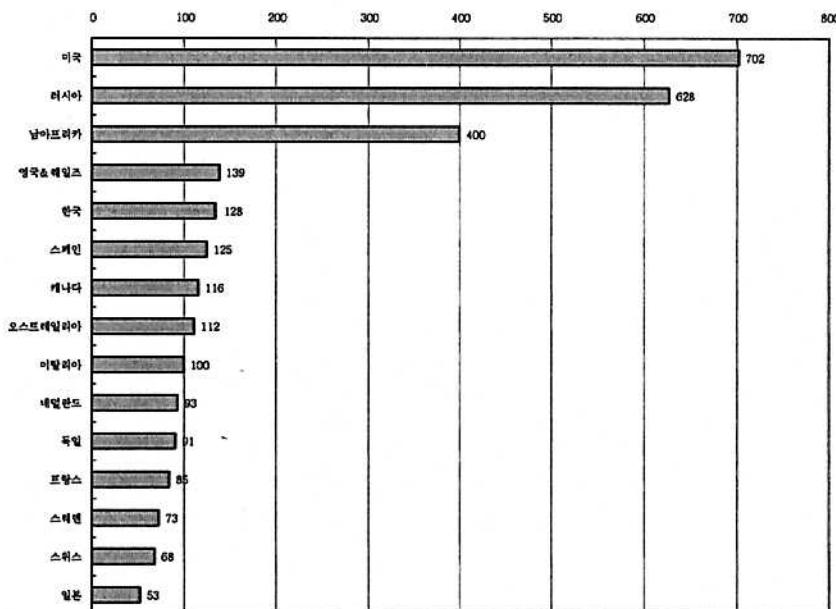
4. <표 3> 성인 중 교정 및 보호대상자⁴⁾

	1980	2000	변화율(%)
보호관찰	1,118,097	3,839,532	243
구치소	164,994	621,149	279
교도소	329,821	1,381,892	319
가석방	220,438	725,527	229
총계	1,832,350	6,568,100	258
성인인구	162,800,000	209,100,000	28
감시대상자(%)	1.1	3.1	182

3) Ibid, p.11, Table 14. 2004년 6월 30일 기준.

국가간 비교를 해보면, 미국의 수감율은 단연 세계 제일이다. <표 4>는 각국의 2002년도 수감율의 비교이다. 미국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702명에 달한다. 러시아가 628명, 남아공이 400명이다. 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100명 내외의 숫자를 보인다. 한국은 중위권 중에서 약간 높은 편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은 미결수의 비율이 높으며, 단기형의 비율 역시 높다. 일본은 범죄율과 수감율 모두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며, 인구 10만명당 53명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5. <표 4> 인구 10만명당 수감율⁵⁾



(2) 사형의 팽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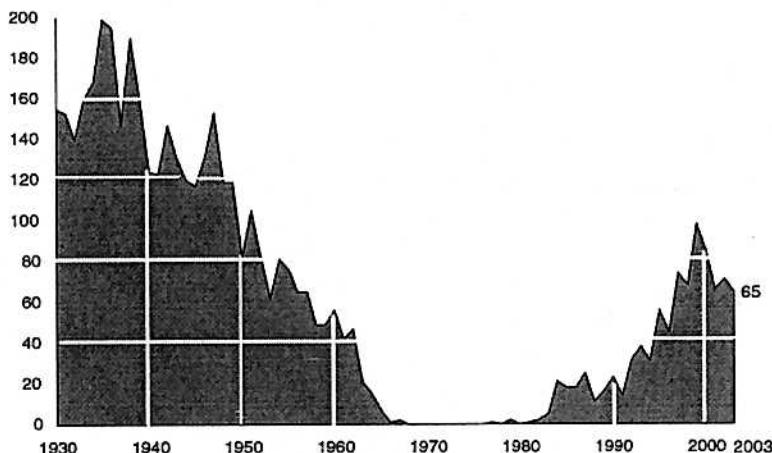
최근 미국의 경향 중 비교법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경향은 사형의 팽창이다. 유럽 국가들은 사형을 법률상 혹은 사실상 완전 폐지하였다. 전세계적으로도 사형의 폐지 및 제한 경향의 확산은 인도주의를 향한 가장 두드러진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⁶⁾ 그런데 이러한 세계

- 4) James Austin, John Irwin, and Charis Kubrin (2003), "It's About Time: America's Imprisonment Binge," IN Thomas G. Blomberg (ed.), Punishment and Social Control, 2nd ed., New York: Aldine de Gruyter, p.434.
- 5) 한국 이외의 국가는 Banks(2005), p.240. 한국은 2002년 총인구 47,615,132명 중 수감인원 61,084명으로 인구 10만명당 128명의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집계함.
- 6) 2003년 말 현재 전세계에서 '모든 범죄에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80개국, '전시범죄 등을 제외한 모든 범죄에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5개국, '사형법제를 갖고 있으나 지난 10년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의 사형폐지국가'는 23개국으로 총 118개국이 법률상 혹은 사실상 사형을 폐지하고 있다. 78개국은 사형을 존치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실제로 사형을 매년 집행하고 있는 국가는 그 중에서도 훨씬 적다. Act50/007/2004, April 2004, Amnesty International.

적 경향에 대해 가장 역진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다.

미국이 언제나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20세기의 3/4분기까지 미국은 풍성한 사형폐지 논의와 함께 사형제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왔다. <표 5>에서 보이듯이, 1930년부터 1967년 까지 미국의 사형집행은 축소지향성을 뚜렷히 보여왔다. 1968년부터 1976년까지는 사형집행이 전혀 없었고, 그로 인해 사형의 사실상의 폐지에 접근하고 있었던 것이다. 1973년 사형선고에 대한 위헌판결⁷⁾이 내려짐으로써 그러한 경향은 정점에 달했다. 그러나 1976년 다른 사건에서 사형의 합헌판결⁸⁾이 내려졌고, 1977년부터 사형이 재개되었다. 그러나 1977년부터 1980년대 초까지는 사형은 극히 예외적으로 집행되었지만, 이후 사형은 계속 확대 되었고, 사형집행에도 별로 거리낌이 없어지게 되었다. 1977년 사형이 재개된 이후 2003년 까지 처형된 숫자는 모두 885명에 달한다.

6. <표 5> 미국 전역의 사형집행건수—장기추세⁹⁾



7) Furman v. Georgia, 408 U.S. 238(1972), 92 S.Ct. 2726 등. 피고인은 살인(murder)과 강간혐의로 기소되었다. 조지아 배심은 그에게 강간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사형판결을 하였다. 조지아주와 텍사스주의 다른 사형선고사건도 같이 계류되었다. 세명의 피고인은 모두 흑인이었다. 연방대법원은 5:4로 사형을 위헌이라 선언했다. 위헌의견 중 일부(2인)은 사형 그 자체가 수정헌법 제8조(잔혹하고 비정상적 형벌은 금지된다)에 해당하여 위헌이라 보았지만, 일부(3인)은 배심원이 아무런 구체적 기준 없이 재량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합헌의견(4인)은 법원이 입법재량에 도전할 수 없음과 사형이 여론상의 지지를 얻고 있음을 지적했다.

미연방대법원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사형은 수정헌법 제8조와 14조에 위반한 매우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이라고 판시하면서 사형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의 즉각적인 효과는 미국 전역에서 사형집행을 공식적으로 중단시킨 것이다.

8) Gregg v. Georgia, 429 U.S. 875, 97 S.Ct. 197 (Mem) U.S., 1976. 피고인은 2건의 살인과 2건의 무장강도 혐의에 대하여 기소되어 총 4건에 대하여 사형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상소하였다. 미연방대법원은 피고의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고, 자동차 수색, 부검 등의 일련의 형사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으므로, 살인혐의에 대한 사형유죄판결 부분은 적절하였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무장강도에 대한 사형판결은 다른 판결들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부적절하고 과도한 것이었다고 판시하였다. 무엇보다 대법원이 합헌(7 대2)으로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에서 배심원의 재량을 인도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이 Furman 사건 이후 제정되었고, 그러한 지침에 따라 재량권의 자의성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이 판결 이후 미국에서 사형이 재개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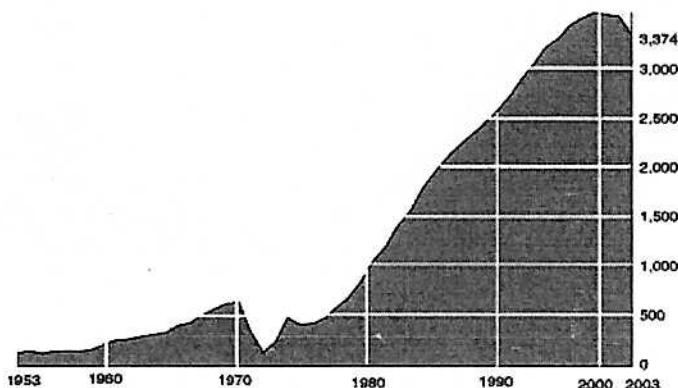
9)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Bulletin, Capital Punishment, 2003, p.10.

사형집행이 미국 전체에 공통된 것은 아니다. 현재 38개주 및 연방정부는 사형조항을 두고 있으며, 12개주 및 워싱턴 D.C.는 사형을 폐지하고 있다. 1977년 이후 사형집행의 2/3는 텍사스(313명), 버지니아(89명), 오클라호마(69명), 미주리(61명), 플로리다(57명) 등 5개주가 차지하고 있다. 2003년 한 해에 처형당한 수는 65명인데, 그 중 텍사스(24명) 및 오클라호마(14명), 노쓰 카롤리나(7명)의 3개 주가 2/3 이상을 차지한다. 어느 해를 보든 텍사스의 사형집행율이 가장 높은 편이다.

이 기간동안 인종별로 보면 백인이 501명, 흑인이 300명, 히스페닉이 61명 등이 사형집행을 당했다. 흑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 1977년 이래 미연방 관할에서 사형이 집행된 것은 2001년 오클라호마 청사에 대한 폭탄테러로 대량살상(168명 사망, 600여명 부상)을 빚어낸 맥베이에 이르러서 처음이다.

처형방법은 약물주사의 방법이 모든 관할권에서 채택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그 방법으로 집행한다. 전기충격, 가스, 교수형, 총살 등의 방법이 일부 주에 채택되어 있으나, 실제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7. <표 6> 사형선고받고 집행대기중인자의 수¹⁰⁾



한편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을 대기 중인자의 총수는 2003년 말 기준으로 총 3,374명에 이른다. <표 6>에서 보듯이 사형선고 건수는 1973년 연방대법원의 사형위헌 선고 직후 급감했다가, 1976년 사형합헌판결 이후 점증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집행대기자 수가 3,59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 뒤 사형대기자 수가 약간 줄어든 것은 대기자 수 중 일부에 대해 DNA 검사 결과 무고함이 판명되었거나, 불확실한 사유가 있어 방면되었거나, 감형된 사례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 기준으로, 사형대기자수가 가장 높은 주는 캘리포니아(629명)이며 텍사스(453명), 플로리다(364명) 등이다. 사형집행건수와 대비해볼 때 가장 두드러진 점은 사형집행건수가 가장 높은 주가 텍사스인데 반해 사형대기자수가 가장 높은 곳은 캘리포니아 주라는 점이다. 1977년 이래 캘리포니아 주의 사형집행건수는 10건 밖에 되지 않는데(텍사스 313명), 이를 통해 캘리포니아 주는 사형선고 건수는 높지만, 집행에

10) Ibid, p.3.

있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예에서도 뚜렷히 알 수 있듯이, 사형선고가 곧 집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형이 집행된 사례에서도 형선고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 1977년부터 2003년까지 총 평균해 볼 때, 사형선고후 집행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평균기간은 121개월이다. 다시 말해 실제로 처형당하는 경우에서도 만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근자에 들어 그 기간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중간소요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사형선고를 받은 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오판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고려도 있으며, 사형반대여론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기기간 동안 진범이 밝혀지거나 증거에 대한 재평가에 의거하여 방면되기도 한다. 사형이 무기형보다 경제적이라는 주장도 이 점에도 볼 때 그리 타당한 것도 아니다. 물론 사형 여부가 인간생명의 경제성 차원에서 평가될 수 없긴 하지만 말이다.

----- (생략)

(2) 강경정책의 극단적 예 : 캘리포니아 주의 삼진아웃법

미국의 강경정책의 압권은 1990년대 이후 시행되고 있는 삼진아웃제(Three strikes and you're out)이다. 야구에서 삼진이면 아웃되듯이,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3번 반복하면 일반 사회로부터 배제시켜 교도소에 초장기간 혹은 종신동안 추방시키자는 발상이다. 누범과 상습범에 대한 특별한 대응 혹은 강경대응은 모든 나라에서 주요한 정책의제 중의 하나이지만, 1990년대 이후의 미국의 동향은 그 급진성 및 광범성에서 이전의 경우와 차원을 달리 한다.

1993년 워싱턴주는 처음으로 삼진아웃법을 입법화했다. 일정한 종류의, 중대한 범죄에 대해 세번째로 유죄확정이 되면 무기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1994년에는 연방형법에도 도입되었다. 다만 연방형법의 경우 그 대상범죄의 범위를 훨씬 협소하게 규정하였다. 삼진아웃법은 단기간에 급속히 번져갔다. 이미 1996년에 이르면 26개 이상의 주에서 삼진아웃법을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¹¹⁾ 그러나 다른 주들이 삼진아웃법을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규정하였고, 실제 시행에 있어서도 제한적 적용의 틀을 따른 데 반해, 캘리포니아주는 그 규정범위, 실제의 시행에서 다른 주들과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 그 때문에 삼진아웃법 하면 캘리포니아주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삼진아웃법은 의회가 아니라 시민의 차원에서 먼저 제기되었다. 살인 범죄의 피해자의 가족인 Mike Reynolds¹²⁾는 매우 광범위한 삼진아웃법을 제안했다. 살범이 아니라 재범부터 추가적 중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 폭력범죄 뿐 아니라 주거침입 등 보다 일반적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점, 세 번째 범행에 대해서는 어떤

11) Franklin E. Zimring et al(2001), *Punishment and Democracy: Three Strikes and You're Out in California*, Oxford University Press, p.17.

12) Mike Reynolds et al.(1996), *Three Strikes and You're Out: A Promise to Kimber : The Chronicle of America's Toughest Anti-Crime Law*, Fresno: Quill Drive Books 참조.

종류의 범죄이든 상관없이 25년 자유형 내지 무기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의 제안은 매우 광범위한 적용대상을 겨냥했다. 그러한 법이 통과된다면 수용인구는 순식간에 확대될 것이고, 죄수에 의해서만 중형을 의무적으로 선고해야 하는 것이기에, 신중한 정책적 접근을 한다면 채택되기 쉬운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삼진아웃법의 이같은 확대적용안은 범죄피해자집단 뿐 아니라 일자리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었던 교도관조합, 그리고 범죄에 대한 역압적 접근을 늘 선호해왔던 미국총기협회(ARA) 등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 상태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사태를 반전시킨 것은 한 사건이었다. Polly Klaas라는 12세의 여아가 1993년 납치당한 뒤, 강간당하고 살해당했다. 범죄자가 전과2범으로, 가석방 중에 이러한 범죄를 자행한 것이 밝혀지면서, 주저하던 분위기는 일변했다. 거기에 당시의 정치적 분위기가 상승작용을 했다. 성과와 인기도가 낮아 재선이 불투명했던 공화당의 주지사(Pete Wilson)은 재선전략으로 이 사건을 포착하고, 범죄에 대한 "강경정책"으로 기선을 잡자고 생각했다.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민주당은 선거에서 범죄정책이 결정적 이슈로 등장하기를 꺼려했다. 민주당의 의회는 아예 상습범, 누범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된 5개의 안 중 주지사가 선호하는 어느 안이든지 수용하겠다고 나섰다. 그럼으로써 범죄대책 여부가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는 것을 중화시키려 한 것이었다. 주지사는 가장 극단적 대책을 골랐고, 그것은 Mike Reynolds의 제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었다. 주의 행정부와 입법부 어느 쪽도 범죄에 대해 관대하다는 이미지를 얻어 정치적 손실을 입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심지어 주검찰의 비교적 온건한 수정안마저 거부되었다.

먼저 캘리포니아 주의 유권자들은 "삼진아웃"이라 불리는 주민발안법을 통과시켰다(이를 Proposition 184라 한다). 실제의 법률의 형태는 캘리포니아 형법전의 개정[Section 667(b)~(i)]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어떤 범죄가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선형범죄인가를 명시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의 개정¹³⁾이 있었다.

이리하여 Wilson은 손쉽게 주지사에 재선되었다. 이후에도 대중의 여론을 중화시키거나 거르는 역할을 누구도 솔선해서 하지 않으려 했고, 이리하여 삼진아웃법 제는 캘리포니아주의 지속적 유산이 되었다.¹⁴⁾

통과된 캘리포니아 주의 삼진아웃법은 다른 주와 그 범위 및 내용을 절적으로 달리하고 있다.¹⁵⁾ 첫째, 중죄(felony) 중 폭력범죄¹⁶⁾ 및 일정한 심각한 범죄¹⁷⁾의 전과가 있는 자는 어떤 종류의 중죄(any felony)라도 범하면, 양형이 인상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둘째, 위 범죄의 전과가 1회 있는 자가 중죄를 또 범했다면 그의 형량은 통상의 형량의 2배의 형을 받게 된다. 위의 일정한 범죄의 전과가 2회 이상 있는 자가 어떤 종류의 범죄라도 한

13) Juvenile Adjudications Qualifying as Strikes: Serious Felonies Within the Meaning of the California Three Strikes Law; Violent Felonies Within the Meaning of the California Three Strikes Law.

14) Zimring et al(2001), p.7.

15) California Penal Code, Section 667 (b)~(i).

16) 폭력범(violent felony)에는 살인(미수), 상해, 강간 및 추행, 사형 혹은 무기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중죄, 강도, 방화, 유괴, 흉기사용 자동차강탈 등이 포함된다. California Penal Code, Section 667.5.(c).

17) 심각한 범죄(serious felony)에는 위의 폭력범도 포함되며, 그 이외에 강간·강도미수, 흉기휴대폭행, 주거침입(절도), 강도, 유괴, 미성년자에게 마약판매·제공, 흉기소지절도 등이 포함된다. California Penal Code, Section 1192.76.(c).

번 더 하게 되면(즉 그의 범죄가 3번째 혹은 그 이상이라면), 그는 △현재 범죄에 대한 형기의 3배 혹은 △25년의 자유형 중 보다 중한 형을 하한으로 한, (부정기의) 무기형을 받게 된다. 셋째, 이러한 삼진(이진)아웃유형의 범죄자에 대하여는 가석방 등이 대폭 제한된다. 즉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하기 전에는 가석방의 가능성은 없다.

8. <표 8> 캘리포니아 삼진아웃법의 개요

	요구되는 전과	현재의 범죄	의무적 복역기간
두 번째 범죄	폭력범, 혹은 “심각한” 중죄(강간, 강도, 주거침입 등) 1회	모든 중죄	통상 형기의 2배. 형기의 80% 이상 복역전에는 가석방 가능성 없음
세 번째 범죄	2회 전과(폭력범 혹은 심각한 중죄)	모든 중죄	25년 내지 종신형, 25년 기간의 80% 복역 전에는 가석방 가능성 없음
비고	16세 이상, 주외의 범죄도 포함시킴.		

삼진아웃법의 가장 기본적 원칙은 중죄자에 대하여 형량을 가능한 늘려서, 그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대폭 제한하자는 것이다. 중죄자에 대한 격리 및 무해화를 기본원칙으로 채택한 것이다. 삼진아웃법이 가져올 효과에 대한 진지한 분석, 부작용에 대한 심각한 고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치적 고려가 정책적 고려를 압도해버린 것이다. Polly Klaas 사건 이후 여론압박에 편승한 졸속적 입법과정은 통상적인 형사입법 제정과정에서의 신중한 공론의 과정을 생략해버렸다. 공청회나 효과예측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집단, 교도관조합, 총기협회 등의 단체는 장기적인 효과분석 같은데 신경을 쓰는 기구는 아니다. 주지사도 주의회도 삼진아웃법안의 일부를 문제삼거나 변경하려는 기도를 하지 못했다. 정치가 맹목적인 여론에 휩쓸려버린 결과, 오직 억압위주의 정책만이 표면화되어버린 것이다.

즉각적인 효과는 수형자수의 폭증이었다. 통상형보다 2배, 가석방조건을 형량의 80%로 해버리면, 교도소에 수용되는 인원이 3배 이상 늘어나는 효과를 갖는다. 25년 양형, 80% 이후 가석방의 요건을 5년 양형, 50% 가석방요건과 비교해보면, 8배 정도의 인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1천명의 25년 수형자가 있는 교도소는, 1년형을 받은 수형자를 25,000명 수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가석방 가능성의 차이를 생각하면 후자의 수형자의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른 주와 달리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현재의 범죄를 ‘모든’ 중죄로 하고 있으므로, 그 대상자의 범위는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1996년 말에 이미, 캘리포니아 주는 삼진아웃법에 해당하는 수형자를 26,074명이나 갖게 되었다. 이는 삼진아웃법을 먼저 도입한 워싱턴 주가 불과 85명인 것과 크게 비교된다.¹⁸⁾ 미국 전역에서 삼진아웃법이 시행되는 실태를 보면, 다른 주들의 경우 삼진아웃법을 거의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 때문에 수형자 수의 증가에

18) Zimring(2001), p.19.

거의 의미있는 기여를 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삼진아웃법은 현실적 효과보다 상징적 효과를 갖는 데 그치고 있다.¹⁹⁾ 1998년의 통계를 보면, 다른 어떤 주도 1000건의 수치까지도 이르고 있는 곳이 없는데 캘리포니아의 경우 4만건의 삼진아웃 관련 양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²⁰⁾ 통계를 달리 구성해보면, 미국전체의 삼진아웃 관련 양형 중에 캘리포니아 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93%에 이른다.

캘리포니아의 삼진아웃법은 형사사법의 권력지형에도 변화를 초래했다. 우선 가석방을 억제하고 가석방 가능성은 예외화함으로써, 가석방의 결정에 관여해온 교정기관의 권한에 제약을 가했다. 자유형을 회피하거나 형기를 제한할 수 있는 법관의 재량권 역시 크게 공격받았다. 사법적 재량 대신 자유형을 필수적으로 부과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법관은 중한 형벌에 대한 천적으로 간주되었다. 다만 검사의 기소재량권은 여전히 유지되었다. 검사가 기소하면 삼진(이진)아웃 대상자의 형량은 자동적이었으므로, 법관의 권한은 축소된 대신 검사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훨씬 커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사법 및 교정에서의 재량권을 둘러싼 견제와 균형의 장치는 무너지게 되었다. 무엇보다 유권자의 직접개입을 통해 형사정책에서 포퓰리즘적 요소가 압도하게 되었다. 그 일례가 법개정의 정족수이다. 통상의 입법과는 달리, 주 상·하원에서 기명투표를 통해 2/3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주민투표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만 삼진아웃법의 개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이다.²¹⁾ 이러한 제한을 둔 것은 유권자의 정부권력—입법, 행정, 사법 모두를 포함한—에 대한 불신을 표출한 것이다.²²⁾

물론 삼진아웃법이 액면 그대로 시행되었다면, 수감인구의 폭발현상은 문자그대로 엄청났을 것이다. 시행상황을 보면 1998년에는, 재범자가 90%, 삼범자가 10% 정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엄청난 가중처벌을 결과하는 3범의 경우 검사의 기소재량을 통한 통제가 사실상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형량을 두배정도 가중하는 재범의 경우라면 형벌의 비례성의 측면에서 그래도 수용할 여지가 있지만, 25년으로 올리는 3범의 경우에는 이를 실무적으로 수용하는 데 곤란스럽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진아웃을 피하기 위해 죄질협상(plea bargaining)이 늘었고, 3진을 피하기 위해 3진재판시 배심재판의 비율이 늘었으며 아예 불기소하는 경우도 늘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삼진(이진)의 효과를 감쇄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삼진아웃 자체에 대하여는 어느 정치가도 행정가도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한 채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시행상의 편법을 통해 삼진아웃양형의 불합리함을 일부 타개하려 해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표 9>에서 보듯이, 2004년말을 기준으로 할 때 캘리포니아 주의 삼진아웃법의 적용실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삼진아웃법으로 인한 수감자의 총수는 40,101명에 달한다. 그 중 이진아웃의 수가 약 4/5, 삼진아웃의 수가 1/5 정도를 차지한다. 삼범의 비중이 1998년 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것이 주목된다. 둘째, 삼진아웃법의 적용대상자를 인종별로 분류해볼 때 흑인>히스패닉>백인의 순서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캘리포니아의 인종분포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는 이 통계는 삼진아웃법이 주로 흑인들에게 더욱 가중된 처벌을 야

19) Ibid, p.20.

20) Ibid, p.21.

21) California Penal Code, Section 667 (j).

22) Zimring(2001), p.218.

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10.

11.

12. <표 9> 캘리포니아 삼진아웃법 관련 수감자 (2004. 12. 31. 기준)²³⁾

	교도소 수감 사유		총수
	이진 아웃	삼진 아웃	
총계	32,527 (81.1%)	7,574 (18.9%)	40,101 (100%)
폭력범죄·성범죄	12,048	3,277	15,325
재산범	9,488	2,344	11,832
마약범	7,898	1,282	9,180
기타	3,093	671	3,764
인종별 (남성)	흑인	11,004	3,356
	히스패닉	10,944	1,930
	백인	7,987	1,890
	기타	1,313	325
	소계	31,248	7,501
			38,749 (100%)

23) Department of Corrections, Data Analysis Unit, New Second and Third Strikers in the Institution Population, December 31, 2004, Sacramento, California.
www.corr.ca.gov/OffenderInfoServices/Reports/Quarterly/Strike1/STR1d0412.pdf 참조.

예수님께 속죄하는 글

김현양(지존파 사건의 범인)

예수님! 저는 주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죽어야 마땅할 이 죄인 김현양은, 이제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알고부터는 언제나 뵙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어 매일 찾고 있습니다만 제가 부족해서인지 아직도 주님을 잘 알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도 주님께서는 늘 제 머리 위에서 지켜보시고 계심을 믿기에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모두 쏟아 놓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1971년에 영광군 백수읍에서 이 세상에 내보내 주셨죠. 어린 시절 중국집을 경영하시는 부친 덕분에 부유하지도 않지만, 그런 대로 걱정 없이 살았으나 제가 중2때 아버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저의 집은 기울기 시작하였죠. 그 후 어머님의 재혼과 다른 친척들과의 불화 등으로 집안이 늘 불안하게 되어 저는 그 당시부터 집과 사회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 때부터 담배를 배웠고 중2년 겨울에 친구 4명과 함께 서울로 상경하여 사회의 한구석 어두운 곳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신문팔이, 껌팔이 등 이른바 “앵벌이”라는 것을 했죠. 그러면서 선배들에게 수없이 맞으면서 저의 사회에 대한 분노가 쏙트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때에 왜 저를 구출하여 주시지 않았나요? 그 당시 주님을 영접하였더라면 지금 이 지경이 안 되었겠지요. 그러나 저의 고독을 달랠 길 없어 룸싸통 웨이터 등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살면서 없는 자에 대한 사회의 불만과 분노는 더욱 커져 갔습니다.

제가 다시 영광으로 내려와 화물차를 운전하게 되었을 때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던 “지존파” 형제들을 알게 되어 드디어 지난날 사회에 대한 복수심으로 이런 끔직한 사건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벌써 죽어야 마땅한 이 죄인을 지금까지 살려 주시여 결국 주님을 알게 되고 영접하게 하여 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도대체 주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저같이 흉악한 살인죄를 지은 죄인에게 그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시는지요? 오늘도 주님의 심부름이라면서 저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영치금을 넣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사랑을 받아야 하나요. 김현양이를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잘 해 주시는지요.

예수님! 저는 요즘 옛날에 가졌던 강한 마음이 너무 약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약하게 만드셨는지 주님이 너무 맹합니다. 저는 주님을 모를 때, 눈물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 전 조그마한 일에도 눈물을 흘리고마는 어린아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약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곧 알게 되었습니다. 옛날의 강한 것이 결코 강한 것이 아니요, 눈물을 흘리는 지금의 이 모습이 결코 약한 모습이 아닌 것임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심과 구원받게됨을 믿고 있습니다. 인간도 아닌 지난날의 김현양을 사탄의 사슬에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사랑을 주시어서,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받아 보지 못 한 참사랑을 주신 분

이 바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인 줄 진심으로 믿는답니다.

예수님!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 부탁을 늘 들어주시는 분이시니 이 부탁도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사탄이 가득한 이 세상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사탄의 노예로 살아왔던 저와 같은 모습이, 다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랑을 베풀고 아껴주는 마음이 세상에 충만하다면 저 같은 불행한 사람이 없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지난날의 제 모습이 부끄럽군요. 왜 내가 그래야 만이 되었는지요. 저의 못난 마음을 빨리 비워 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웃에게 베풀어 남은 생애, 얼마 남지 않은 삶이나마 빛을 갚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세상도 부모도 사회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늦게 알게 된 것을 한탄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들이여 나같이 되기 전에 빨리 주님을 찾으십시오. 속히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어두움의 자식이 빛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그 영혼이 살아 남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요즈음 감방 안에 있는 재소자들과 아침, 저녁으로 찬송과 기도를 하고 있답니다. 서투른 기도, 못 부르는 찬송이지만 진실된 마음과 음성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결코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충실한 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 처음 드리는 저의 속죄의 편지를 끝까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모든 형제들에게 감사드리며 이 은혜에 보답하고자 더욱 열심히 속죄하며 전도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아울러 선교회 회원님들께서도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하오니 그 위에도 은총을 내려 주세요.

추운 겨울에 따뜻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참되게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형법 제250조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1996. 11. 28. 95헌바1)

【판시 사항】

1.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살인죄에 대하여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25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결정 요지】

1. (가)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나,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곧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공공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모든 인간의 생명은 자연적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할 것이나 그 동등한 가치가 서로 충돌하게 되거나 생명의 침해에 못지 아니한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재산 등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어떠한 생명 또는 법익이 보호되어야 할 것인지 그 규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적 효과로서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사형은 이러한 측면에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적어도 우리의 현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기도 하므로 아직은 우리의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2. 형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살인의 죄는 인간생명을 부정하는 범죄행위의 전형이고, 이러한 범죄에는 그 행위의 태양이나 결과의 중대성으로 미루어 보아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지워질 수 있는 극악한 유형의 것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형을 형벌의 한 종류로서 합헌이라고 보는 한 그와 같이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행

위에 대하여 행위자의 생명을 부정하는 사형을 그 불법효과의 하나로서 규정한 것은 행위자의 생명과 그 가치가 동일한 하나의 혹은 다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의 선택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재판관 김진우의 반대의견

1.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 요청은 형사립법, 형사법의 적용과 집행의 모든 영역에서 지도적 원리로서 작용한다. 그러므로 형사법의 영역에서 립법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악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 내지 제한하는 것이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형벌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 반한다. 사형제도는 나아가 양심에 반하여 법규정에 의하여 사형을 언도해야 하는 법관은 물론, 또 그 양심에 반하여 직무상 어쩔수 없이 사형의 집행에 관여하는 자들의 양심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형벌제도이기도 하다.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1.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생명권의 제한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된다. 가사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상의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형벌의 목적은 응보·범죄의 일반예방·범죄인의 개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벌로서의 사형은 이와 같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생명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그 수단으로서의 적정성·피해의 최소성 등 제원칙에 반한다.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

(유인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1129

발의연월일 : 2004년 12월 9일

발의자 : 국회의원 175인

법률 제 호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형벌 중에서 사형을 폐지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범죄자의 인권보호 및 교화·개선을 지향하는 국가형벌체계를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형의 종신형 대체)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하고 이를 종신형으로 대체한다.

제3조(종신형의 정의와 종류) ①종신형이라 함은 사망때까지 형무소내에 구치하며 형법에 의한 가석방을 할 수 없는 형을 말한다.

②종신형은 종신징역과 종신금고로 나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형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는 종신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국가인권위원회, 사형폐지 의견표명 (2005. 4. 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5년 4월 6일에 열린 제8차 전원위원회에서 사형제도는 헌법 제10조(인간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및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의 원칙)과 사형 폐지를 직접적으로 촉구하는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 정서(이하 사형폐지규약이라 한다)의 취지에 따라 사형폐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03년 인권위는 인권현안 10대 과제중 하나로 정부에 제출된 사형제도에 대하여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고, 사형제도에 대한 국내외 동향, 사형관련 규정, 범죄, 판례 등을 분석하고, 그 쟁점에 대하여 검토해 왔습니다.

인권위는 사형제도에 대하여 2004년 11월과 12월 소위원회와 전원위원회에서 각각 1회 논의를 하였고, 2005년 3월~4월에 3회에 걸친 전원위원회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하여 폐지안, 사형을 폐지하되 감형·가석방 없는 종신형안, 사형을 폐지하되 일정기간 감형·가석방 없는 무기형안, 사형을 폐지하되 전시에는 존치하는 안, 현행 사형범죄 범위 등의 축소방안, 현행 유지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2005년 4월 6일에 열린 제8차 전원위원회에는 총 11명의 위원중 9명의 위원이 출석하여 사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사형폐지안에 8명, 사형존치안에 1명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만 사형폐지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감형·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일정기간 감형·가석방 없는 무기형 제도 및 전쟁 시 예외적으로 사형제도 유지 의견이 있었던 바, 이러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입법과정에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끝

사형을 폐지하면 중죄인을 무슨 형으로 다스릴까?

우리에게는 무기형이 있다. 무기수의 짜질은 사형수와 거의 다를 바 없다. 흉악한 살인범죄를 저질렀으며, 개선가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자가 무기형에 처해진다. 연간 50-70명이 무기수로 새로 확정된다. 그 중 여성은 3-4인 정도이다.

나는 남성무기수와 여성무기수를 각각 조사연구한 바 있다. 여러 교도소를 찾아다니며 무기수를 면담하고, 설문조사하고, 그들의 범죄기록을 확인해 봤다. 남성무기수에 대한 길다란 연구는 jus.snu.ac.kr/~ishan에 들어가 논저-논문-[2001]에 보면 "무기수형자의 시설내 적응과 사회복귀에 관한 연구"가 있다. 방대한 연구인데, 독자를 위해 XII 장에 <요약 및 정책적 제언>으로 정리된 부분을 읽으면 될 것이다.

이어 여성무기수에 대한 긴 논문을 썼다.

남/녀 무기수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얻는 결론 중의 하나는

누구에게도 자유의 희망을 빼앗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자유의 희망을 완전히 빼앗으면 인간은 자기개선을 위한 의지를 가질 수 없다. 길고긴 무기의 수형생활을 견뎌내고, 4급의 무기수가 1급의 모범수가 되는 15년 이상의 기간을 인내하도록 만드는 힘은 자유에의 희구이다.

그런 점에서 가석방가능성 없는 무기형은 잔혹한 형벌이며, 개선가능성을 봉쇄하고, 교도소에 수형자를 누적시키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사형을 폐지한다 해도, 대안은 <가석방없는 무기형의 도입>이 될 수 없다. 그냥 사형을 폐지하면 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형을 선고받을 만한 범인은 무기자유형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장기적 노력을 통해 자기개선의 증거를 보일 때, 감형과 가석방의 가능성이 생길 것이다.

이제까지의 경험을 보면, 남자무기수는 16-18년 이상, 여자무기수는 13-16년 사이에 감형의 가능성이 생긴다. 무기수가 가석방되기 위해서는 아주 잘해도 20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된다. 30대 초반에 들어갔다면 50대 초반에 사회에 돌아오는 것이다. 그들이 원래 범죄했을 때와 같은 그 흉악범일까?

2006.2.20. 앵네스티에 보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폐지에 대한 글이다.

앵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사형제 폐지운동에 부쳐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은 21세기의 일반적인 추세다. 사형제 폐지 결의안은 한국에서도 국회에 여러 차례 상정됐다.

사형은 민주주의 기초에 반하는 행동이다. 민주주의는 사람의 생명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존중하는 것이며, 생명을 끊는 것은 법의 이름으로 이뤄진다고 해도 인권의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사형의 경우 집행되고 나면 그 잘못을 시정할 길이 없다. 우리는 검사나 판사가 잘못 판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보다 우려되는 것은 독재자들이 민주주의 주창자들과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하고 물아내는 수단으로 사형제를 잘못 사용한 수많은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인혁당의 가담자들이 잘못 기소된 뒤 사형됐고 나조차도 사형 언도를 받고 거의 사형에 처할 뻔 했다.

죄인들이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사형에 처하는 것은 범죄의 감소에 기여하지 않는다. 사형을 종신형으로 감형하면 오히려 죄인들이 그의 범죄에 대해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기회를 줄 수 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한 사람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한다. 주변환경이나 자신의 행동 결과에 따라 착한 사람도 악한이 될 수 있고 그 반대도 성립한다. 우리는 사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뉘우치고 새로운 삶의 한 장을 시작하는 수많은 경우를 보아왔다.

내가 대통령으로 재임한 5년 동안 단 한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았고 몇몇 경우 종신형으로 감형됐다. 이유는 사형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민주주의와 인권에 반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형제가 폐지돼서 민주주의의 완전한 실현이 한국 뿐 아니라 세계 전체에서 이뤄지길 진심으로 희구한다.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
200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3) 사형위하에 의한 일반예방효과 확보 ?

“사형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본능을 이용한 가장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그 위하력이 강한 만큼 이를 통한 일반적 범죄예방효과도 더 클 것이라고 추정되고 또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나 소박한 국민일반의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결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사형이 과연 흉악범죄(특히 살인범죄)를 억제하는 효과(deterrent effect)가 있는가 하는 점은 엄격한 과학적 입증과 과학적 추론을 요하는 것이다. 사형이 범죄억제효과가 없다면 가장 결정적인 부분에서 사형의 ‘필요성’이 부인되는 것이며, 그럴 때 소위 “필요악”的 주장은 “절대악”일 뿐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적 논거의 과학적 추론화의 시도를 완전히 피해가면서 “위하력이 강한 만큼……효과도 더 클 것”이라고 막연히 “추정”하고 있다. 이는 지극히 비논리적이다. 더욱이 그러한 예방효과를 거론하는 데 있어 “소박한 국민일반의 법감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은 정밀과학에 대하여 소박한 의식을 대치시켜 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

1건의 사형이 과연 후속 살인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가. 이 쟁점은 그동안 범죄학자들의 많은 논쟁의 주제였다. “소박한 법감정”으로 사형의 범죄억제효과가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느낌은 과학적 자료에 의한 지원을 얻지 못하고 있다.

① 우선 전체 살인건수의 극히 일부만 사형이 선고되고 일부만 사형집행이 이루어진다. 극히 일부의 처형으로 전체 살인건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그 수치는 극히 미미할 것이다. 과거 사형의 억제효과를 입증했다는 학자들은 1건의 사형이 적어도 7건의 살인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런 논지를 따른다 해도 사회적으로 영향을 줄만한 살인감소율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몇십배의 사형을 더 선고·집행해야 한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만큼의 사형도 비판의 십자포화를 받고 있는데, 몇십배의 사형을 이 문명사회에서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가.

② 사형을 폐지한 나라에서 살인율에 의미있는 변화가 초래되지 않거나, 오히려 살인이 감소되는 나라가 더 많다. 일본의 경우 지난 몇십년간 사형은 감소되어 왔으며, 살인사건도 약간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래 <표 7>에서 보듯이 미국의 경우 1976년 이후 사형은 20여년동안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인구 10만명당 살인건수는 거의 변동이 없다. 우리의 경우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해도 있으며(1981, 1988, 1993년 등), 사형의 집행을 매우 억제한 해도 있지만, 그것과 살인율과는 무관하다.

살인을 하는 자가 사형선고와 집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질 리 없다. 상당한 정보를 가진다면 “어느 사건의 당사자가 사형당했다더라” 하는 정도일 것이며, 살인범에게 사형에 관한 정보를 물어본다면 정보라고도 하기 힘든 막연한 느낌밖에 없을 것이다. 그 막연한

느낌으로 살인이란 강력한 행동을 억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는 매우 어렵다.

③ 범죄를 사전에 계획하는 豫謀犯의 경우에도 범죄자들은 자신의 범행이 적발, 체포, 처벌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고심하지,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실감도 덜한 사형이란 위협 때문에 범죄가 억제되지 않는다. 예모범들은 자신의 범행이 적발되지 않고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므로 범행에 이르게 되며, 그 경우 사형이란 멀리 떨어져 있고, 실행 가능성도 극히 낮은 형벌을 통해 범행을 억제한다는 것은 논리상 성립하기 어렵다.

④ 많은 살인범죄들은 결정적인 심리상태에서 저질러지며, 그런 결정상태에서는 범행이 줄 수 있는 가능한 결과에 대한 냉철한 성찰 없이 행동이 저질러진다. 살인의 현장이 처참할수록 높은 형의 선고가능성이 높을 것인데, 그런 처참한 상황 중의 다수는 범행에 익숙하지 않은 자에 의해 저질러진다. 살인죄는 다른 폭력범이나 재산범보다 비전과자가 다수라는 사실에서도 이 점은 입증된다.

⑤ 정치적 목적, 종교적 목적에 도취되어 있는 자에게 사형은 아무런 억제효과가 없다. 오히려 사형은 순교자의식을 고양시키며, 사형 자체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여겨질 수 있다.

⑥ 살인을 억제하기 위해 사형이란 주변적이고 제한적인 수단을 쓴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살인율은 그 사회의 총기 및 흉기에의 접근가능성, 사회적 갈등의 정도와 처리방식, 가정내 갈등의 정도, 알콜 및 마약중독, 범죄성 정신장애, 그 사회의 문화풍토 등의 한 단면이다. 사형은 살인을 포함한 범죄문제를 해결하는 데 쓸모있는 무기가 될 수 없다.

(7) 우리의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 사형은 시기상조 ?

“한 나라의 문화가 고도로 발전하고 인지가 발달하여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가 실현되는 등 시대상황이 바뀌어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 가진 위하에 의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거의 없게 된다거나 국민의 법감정이 그렇다고 인식하는 시기에 이르게 되면 사형은 곧바로 폐지되어야 하며….”(현법재판소)

우선 그런 이상사회는 앞으로 도래하지 않을 것이다. 범죄는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구성을이며,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범죄는 그 한 부분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어떤 선진국도 문화와 인지가 발달하여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사형을 폐지한 것이 아니다. 사형을 두고 있지 않는 나라의 살인율은 우리보다 대체로 높은 편이다. 흉악범죄 없는 나라가

과연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때문에 이러한 시기상조론은 앞으로 영구히 사형을 폐지하지 않겠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며, 사형이 바람직하다는 것의 우회적 표현일 뿐이다. 그 시기상조론자에게 묻고 싶다. 반세기동안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국민의 법감정에 기대는 논법도 종종 등장한다. 아닌게 아니라 사형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의 결과는 존치론 쪽이 대체로 다수를 점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살인에 대해 사형이 당연하다'는 식의 '소박하고 평범한 서민감각이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위 헌법재판소 결정 중 조승형 재판관의 반대의견 중에서 인용).

일반시민으로서는 범행의 숨겨진 동기, 사형의 살인예방효과의 유무, 사형수의 개선 가능성, 범죄피해자가 진실로 필요로 하는 것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지는 판단일 수 있다. 이런 여론조사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것을 그대로 따르면서 사형존치의 정당화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사형과 같은 쟁점은 끝없는 계몽적 노력의 결과 개선되어지는 것일 뿐, 그저 여론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건국 이후 법원판례에서 한번도 위헌론이 비쳐지지 않은 이러한 풍토, 즉 제도권 내에서 계몽적 노력이 거의 전무했던 상황 속에서 오직 국민의 법감정만 개선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국민의 여론조사 등에서 보여지는 원초적인 법감정은, 계몽의 필요성을 더욱 보여주는 자료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각국의 사형폐지론의 진전은 국민의 여론을 액면 그대로 존중하는 가운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률가 및 입법자들의 의지적 노력 및 정치적 결단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때문에 대중의 여론에 기대어 회피하려는 것은 이제까지의 사형폐지의 역사적 경험과도 배치되며, 법률가 및 입법가의 자기임무를 방기하고 그것을 대중의 탓으로 전가시키는 것이다.

사형의 오판가능성

우선 오판사례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종교적 광기, 인종적 편견, 이데올로기적 편견 등 각종의 편견이 오판의 구조적인 배경을 제공하였다. 이같은 편견은 지금도 여러 사법적 결정에 오점을 드리우고 있다.

그같은 구조적 편견에 오염되지 않는 자라 할 지라도 오판의 위험성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형사사건에서 쓰이는 증거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증거로 널리 쓰이는 것은 피고인의 자백, 목격자 증언, 그리고 살인 사건 등에서 널리 보여지는 과학적 감정 등이다.²⁴⁾ 그런데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에 의한 강압수사의 산물인 경우, 심리적 곤경의 산물인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자백의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하지만, 고문이나 강압을 받았음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그 입증에 실패한 경우 그 자백은 증거로 쓰일 수 있게 된다. 고문이나 강압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회유에 의한 자백, 진범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 자백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

목격자 증언의 경우 그 목격사실의 확실성이 종종 의심되어지기도 하며, 가장 확실한 것

24) 오판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분석으로 Huff, C. et al.(1996), Convicted but Innocent: Wrongful Conviction & Public Policy, London: Sage 참조.

처럼 보이는 사실도 매우 주관적인 해석작용을 통해 왜곡되어질 수 있다. 인간의 목격행위는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행지식과 편견을 통해 굴절되어지며, 그 목격을 기억화하는 과정에서도 일종의 의식·무의식상의 왜곡이 생겨날 수 있다.

과학적 감정(鑑定)의 질은 종종 의심받는다. 검시과학의 발전수준에 따라 지금 유죄의 증거로 보이는 것도 조금만 지나면 그것을 증거로 삼기 곤란한 경우도 생겨날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생겨난다. 같은 자료를 놓고도 전문가마다 다른 해석을 내리는 것도 자주 접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의 경우 검시자가 수사의 초동단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경찰로부터 들은 내용과 검시자료를 종합하여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더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풍토하에서 실제로 자백과 목격자 증언, 감정을 받고 유죄로 선고된 자 중에서 나중에 진범이 밝혀져 무고함이 드러난 경우도 적지 않다.²⁵⁾ 그리고 감정의 정확성을 둘러싸고 유죄/무죄/유죄 등이 번복되는 사례도 있다.²⁶⁾ 그렇다면 가장 편견없이 임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오판가능성은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으며, 실제로 오판임이 드러난 사건도 적지 않음을 본다.²⁷⁾ 이럴 때 법률은 인간의 생명을 돌이킬 수 없게 훼손하는 사형이란 제도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의 시기별 차이

특히 과거 시점에서 정치적 이유로 사형당한 자들 중 대다수는 지금의 시점에서 사형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론재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취하고자 하는 권력의지 앞에 무고한 희생자들이 양산되는 것이다. 6·25 때 한강인도교 폭파사건의 책임자로 처형된 최창식 공병감은 전시하 사회적 비난여론에 대한 속죄양으로서 기능했을 뿐이며, 사후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로 번복되었다. 조봉암, 조용수, 인혁당, 남민전 등은 오늘날의잣대로 보면 처벌가치(penal value)가 없거나 경미한 사건이었음에 틀림없다. 김재규 사건에서도 충분한 냉각기간을 가졌더라면 모든 관련자들이 다 사형받았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당시의 시점에서 가장 큰 비난을 받는 사례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적 거리를 갖고 재평가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런 사안에 대한 성급한 처형은 돌이킬 수 없는 오류를 낳을 수 있다.

25)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1980년대의 김기훈 사건, 1990년대의 김기웅 순경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들에서는 목격자 증언의 진실성 문제, 자술서의 증거능력, 사망시간 감정의 정확성, 초동수사의 실패, 그리고 고문으로 자백강요 등이 총체적으로 문제되었다. 이들 사건은 우연히 진범이 검거됨으로써 범죄혐의를 벗을 수 있었으나, 그러한 우연이 없었다면 살인죄로 처벌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자백, 감정, 증언 등의 문제가 이들 사건에만 예외적으로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당시의 수사관행 및 수사수준에 따라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언제나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26) 최근 치과의사의 모녀살해피고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사망시간이었다. 그 사망시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의 감정에 대하여 제1심에서는 그 국과수 감정을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배척하였다.

27) 80년대의 오판가능성 및 오판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조갑제, 사형수 오휘옹 이야기, 한길사, 1986 ; 조갑제, 고문과 조작의 기술자들, 한길사, 1987 참조.

사형과 피해자 (가족)의 법감정

source:

<http://jus.snu.ac.kr/~ishan/bbs/zboard.php?id=sub1>

국가는 단지 피해자가족을 대신해서 기계적으로 집행하는것이지
국가가 직접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이 죽여도 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에따라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이어받은 국가권력이 대신해서 단지 집행하는 것입니다
어떤작자는 어떻게 국가가 인간을 죽이는가하지만
그것은 과거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일부 사건이고 지금은 그런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리구 사형을 없앤다면
얼마나 죽음이 두려운가를 모를 것입니다.
사형 제도를 없앨경우의
국민에게 미칠영향을 생각하시기바랍니다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리 양을 살리기위해
다른 양을 다 버리란 말인가?

달리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자신의 가족이 누군가에게 잔인하게 살이 찢겨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 보면 죄인에게 인권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살이 찢긴 채 시체로 발견된 자신의 가족을 보면서 그래도 인간은 존중되어야 한다느니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어쨌다느니 하는 말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물론 개중에는 그런 관대함을 지닌 사람도 분명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죄인과 함께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공기를 마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을 수 없는 치욕스러움이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그런 죄인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쾌한 일일 것이다.

사형 제도는 죄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용서를 빌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속죄의 길이다. 사실 죄인이 사형으로써 그렇게 죽음을 당한다 하여도 피해자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가족의 분노와 슬픔과는 맞바꿀 수도 없다. 하지만 그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죄값을 치렀다고 할 수 있겠는가. 무고한 목숨을 잃은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의 분노를 조금이나마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사형 말고 또 있다면 얼마든지 그 방법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 가장 소중하고 최대한의 가치인 목숨을 내놓는 것 말고 더 이상 어떤 대안이 있을지 의문이다

2007.01.05 (금) 오전 4:23

반기문 총장 '만만찮은 신고식'

새 출발을 다짐하며 전용 방탄차량을 물리치고 걸어서 첫 출근을 한 반기문(사진) 유엔 사무총장이 흑독한 신고식을 치르고 있다.

공식 업무가 시작되기 전부터 시작된 미국 언론의 '견제구'가 다양하고도 쉼 없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반 총장은 "후세인의 처형은 각국이 법에 따라 정하는 문제이며, 유엔 회원국은 국제 인권 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세인으로 인한 학생자를 잊지 말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주요 미국 언론은 반 총장의 발언을 사형 옹호 의견으로 규정하고 '유엔의 방침이 달라진 것이냐'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반 총장이 언론을 대하는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12월 25일 미국 ABC 방송에 출연한 반 총장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불법인지를 묻는 진행자에게 즉답을 하지 않아 "당신은 원하지 않는 답은 안 하는군요. 왜 당신이 '미끄러운 뱀장어(slippery eel)'라고 불리는지 알 수 있겠소"라는 얘기를 들어야 했다.

총장 취임선서 후 열린 기자회견도 반 총장을 당혹하게 했다. 한 기자가 강한 캐나다 억양의 프랑스어로 "프랑스어가 왜 유엔에서 통용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나"고 질문했는데 반 총장이 이 질문을 알아듣지 못해 무슨 말인지 되물은 것. AP통신 등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반 총장이 프랑스어 첫 시험서 낙제(funked)하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언론에서 나오는 다양한 '반 총장 떠보기'는 이라크 문제와 후세인 사형 문제를 유엔에 떠 넘기고 싶어 하는 미국과 미국 언론의 태도가 반영된 인상도 있지 않다.

한편으로는 한 국가의 외교사령탑에서 생각과 문화가 다양한 세계를 이끄는 외교사령탑으로 변신하는 통과의례가 간단치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뉴욕=공종식 특파원 kong@donga.com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후세인측근 사형 중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성명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6일 조만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당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최측근 2명에 대한 사형을 중지할 것을 이라크 정부에 촉구했다.

유엔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반 총장은 가까운 장래에 사형에 처해질 후세인의 최측근들에 대한 형 집행을 중지해 줄 것을 이라크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비자이 남비아르 유엔 사무총장 비서실장은 사형집행 중단을 촉구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에 대한 반 총장의 지지를 거듭 강조하는 서한을 주유엔 이라크 대표부에 전달했다.

성명은 또 "서한은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인도주의 및 인권법의 모든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반 총장의 견해를 언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세인과 함께 사형이 확정된 그의 이복동생이자 정보국장을 지낸 바르잔 이브라힘 알 티크리트와 혁명재판소장이었던 아와드 아흐메드 알 반다르는 조만간 형 집행이 예상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사형제에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EU) 순회 의장국인 독일 외교부의 마르틴 예거 대변인은 "EU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형제에 반대한다"면서 "사형집행은 이라크 수니파와 시아파의 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기 영국 총리로 유력한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도 6일 방영된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후세인에 대한 사형집행은 개탄스럽고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로마 콜로세움에서는 이날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불빛이 환히 밝혀졌다. 수 많은 검투사들이 숨져간 콜로세움은 1999년부터 전 세계에서 사형이 감형되거나 사형제도가 폐지될 때마다 불을 밝히는 행사를 열면서 사형반대운동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뉴욕=장인철 특파원 icijang@hk.co.kr

입력시간 : 2007/01/07 19:27:05

수정시간 : 2007/01/07 22:37:38

'후세인 측근 교수형' 비난 확산

지난 15일 새벽 집행된 바르잔 이브라힘 알 티크리티 전 이라크 정보국장과 아와드 알 반다르 전 혁명재판소장의 교수형은 이라크 전범 처형 논란을 넘어선 '엽기적' 사건으로 비화됐다. 바르잔 이브라힘의 목이 처형과정에서 몸과 분리됐기 때문이다. 수니파 주민들은 물론, 시아파 주민들까지 경악하고 있고, 유엔과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 비난도 잇따르고 있다.

미셸 몽타스 유엔 대변인은 15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자신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의 사형집행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처형된 것에 유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루이즈 아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도 "이들의 처형이 이라크에서 정의의 실현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라크 정부도 "사고였다."면서 방어에 급급하고 있다. 형집행 과정에 언론사 카메라를 참석시킨 사실도 시신을 의도적으로 훼손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공개했다. 알리 알 다바흐 이라크 정부 대변인은 "국제 규정에 부합되게 사형대를 설치했다."면서 "매우 드물게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AP등 외신들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 '과학적·효과적으로 사형수의 목숨을 앗기 위해 고안된 교수형'의 결말은 목이 부러지거나, 질식사, 또 목이 몸과 분리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서울신문 기사일자 : 2007-01-17 14면

동아일보 2007.1.5. [A4]

김성호 법무부 장관 “기업 자금조달 쉽도록 법 손질”

–최근 일부 언론에서 9년 만에 사형 집행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현재 국회에 사형제 폐지 법안이 계류 중이어서 아무 선입견 없이 검토하고 있다.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지만,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정서도 있다. 사형제를 함부로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대세가 아닌가 싶다. 반인륜적 범죄에까지 사형 폐지를 적용하는 건 곤란하지 않나 싶고, 사형 대상 범죄를 줄이는 절충안이 있을 수도 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